

#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유정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9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  
발 의 자: 유정희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 경, 김규남, 김기덕,  
김원태, 김태수, 남창진,  
문성호, 박유진, 박철성,  
왕정순, 유정인, 이상욱,  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 
이종환, 임종국, 최민규,  
한 신, 홍국표 의원(20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는 명예시장 위촉 인원이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고 있어,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하는 데 제약이 있음. 이에 따라, 위촉 인원 제한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.
- 위원회 및 간담회 참여 등 임무 수행을 위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분야별 다양한 인물을 폭넓게 발굴하고 위촉할 수 있도록, 정원 20명 이내의 정원 규정에 대한 문구 삭제(안 제5조제1항).
- 나. 명예시장으로서의 시정참여, 정책제안, 소통·홍보활동 등을 수행시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함(안 제10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명예시장을 위촉하며,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”를 “명예시장을 위촉한다.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한 때에는”를 “제3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한 때에는 해당부서의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명예시장의 위촉) ① 시장은 어르신, 장애인, 전통상인,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<u>명예시장을 위촉하며, 정원이 20명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야를 확대 또는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5조(명예시장의 위촉) ① 시장은 어르신, 장애인, 전통상인,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별로 <u>명예시장을 위촉한다.</u></p>
<p>제10조(예우 및 수당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명예시장이 <u>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예우 및 수당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명예시장이 <u>제3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#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5조(명예시장의 위촉)	×	현행 같은 조례 제5조(명예시장의 위촉)의 정원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명예시장 인원(Q)이 증가하여 명예시장 사업운영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 결과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추계가 곤란
2	제10조(예우 및 수당 등)제2항	△	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 - 동 개정안 제5조(명예시장의 위촉) 및 제10조(예우 및 수당 등)제2항에 따른 명예시장 제도 사업운영 추가재정소요액은 서울시 관련부서(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) 확인결과 비용추계를 위한 대상(Q)이 정해지지 않아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
  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명예시장 제도 운영비 증가분을 추정하려면 향후 늘어나는 명예시장의 인원(Q)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이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으로 인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비용추정이 곤란함
    - ⇒ 참고로 향후 명예시장 인원이 늘어날 경우 회의 참석수당 등에 영향을 미쳐 기추진<sup>1)</sup> 하고 있는 명예시장회의운영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
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  
 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주    병    준  
 추계세계팀장      김    중    헌  
 추계분석관      손    제   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[기추진사업] 서울시 <2025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> : 58,268천원

- 서울시 명예시장 제도 운영예산은 현장소통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, 세부내역 아래와 같음
- 명예시장 선발 및 위촉 추진 5,000천원 / 명예시장실 운영경비 1,200천원 / 명예시장 회의 운영 8,800천원
- ※ 자료 : 2025 서울시 홍보기획관 예산서